

「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」 신규조문대비표

2019. 2. 25. 개정 판 (시행 2019. 3. 1.) → 2025. 2. 27. 개정 판 (시행 2025. 3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42/compare?from=1157&to=163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7:25:5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후지도)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,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-02-25>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. <개정 2019-02-25> 1. 학생상담센터: 진로/심리(집단)상담, <u>종합인적성검사</u> 등 2. 건강증진센터: <u>음주·흡연예방교육</u> , 건강예방생활, 정신건강 상담 등 3. 장애학생지원센터: 장애학생/학부모 상담 지원,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. 양성평등센터: 성희롱/성폭력 상담, 성윤리상담실 5. 스타트업지원센터: 취업진로 상담, 창업진로 상담, 경력관리 개발 6. 국제학생지원센터: 외국인 학생 학습/진로/생활 상담	제4조(사후지도)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,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-02-25>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. <개정 2019-02-25> 1. 학생상담센터: 진로/심리(집단)상담, <u>심리검사</u> 등 2. 건강증진센터: <u>음주·흡연예방교육</u> , 건강예방생활, 정신건강 상담 등 3. 장애학생지원센터: 장애학생/학부모 상담 지원,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. <u>SU인권센터</u> : <u>인권침해</u> 상담 및 교육 5. 스타트업지원센터: 취업진로 상담, 창업진로 상담, 경력관리 개발 6. 국제학생지원센터: 외국인 학생 학습/진로/생활 상담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"종합인적성검사"를 "심리검사"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"음주·흡연예방교육"을 "음주·흡연예방교육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중 "양성평등센터: 성희롱/성폭력 상담, 성윤리상담실"을 "SU인권센터: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